

시민고충처리위원회(지방옴부즈만) 고충민원 처리사례

□ 민원 제목 : 과수원 예정지 일조피해

□ 신청 취지

- ▼▼ 집하선별장 증축공사로 인하여 재배품목(복숭아→포도) 변경으로 과수원 조성 예정지에 과수목 식재후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며,
- 민원인은 ▼▼ 측에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 또는 과수원 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음.

□ 피신청인의 주장

- 증축공사를 착공할 당시에는 이미 복숭아 과수목을 전부 제거한 상태로 증축에 따른 일조피해를 주장할 이유가 없고,
- 참고 증축으로 인해 일조피해가 예상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협의하였으나, 민원인은 전체 면적을 매입하라고 주장하고 있어, 협의가 어려운 상태임.

□ 사실관계

- 사업개요
 - 사업명 : ▼▼▼▼▼지원사업
 - 사업기간 : '20. 2. ~ '20. 12.
 - 보조사업자 : ○○○○
 - 사업내용 : 집하선별장 신축
 - 사업량 : 농산물 집하선별장 1동(330㎡)
 - 대상지 : 충북 영동군 ○○면 ★★리 ◇◇번지외 1필지
 - 사업비 : 165,000천원(도비 29,700, 군비 69,300, 자담 66,000)

○ 과수원 현황

- 위 치 : 충북 영동군 ○○면 ★★리 △△번지(창고 옆)

- 현 황

- . 복숭아 과수원을 운영하다가 2019년 여름에 복숭아 수확후, 같은 해 10월경 복숭아 나무를 모두 제거하였으며,
- . 2021년 4~5월경 포도(샤인머스켓)으로 품목변경하여 식재할 예정으로 복숭아 나무 제거후 1년정도 지력을 높이는 기간이 필요하여 공사 당시에는 과수목을 식재하지 아니하였음.

□ 관계 법령 등

- 건축법 제61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에 따른 높이 제한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적용되며,
- 농림지역인 민원 소재지에는 적용되지 않음.

□ 판단 및 결론

- 민원인도 실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, 단지 예상되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,
- ▼▼에서도 민원인이 과수목 식재후 실제 피해를 본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의 의지가 있으므로,
- ▼▼ 측에 민원인과의 향후 보상협의를 위해 피해면적, 피해 보상액 등 산정방법에 대한 협의안을 제시하도록 중재하였음.
- 또한, 협의가 어려울시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피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.